##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274 발의연월일: 2025. 3. 21.

발 의 자:정동만·엄태영·최은석

김위상 · 최형두 · 이인선

진종오 • 이종배 • 구자근

박성민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노인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노인·장애인 복지시설, 도시공원 및 생활체육시설 등의 시설 또는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구간을 노인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각각 지정하여 차마와 노면전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노인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차마 등의 통행속도를 제한하더라도 이를 표시하기 위한 안전표지 등 교통안전 시설·장비나 통행속도의 위반을 단속하기 위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우선설치 등의 근거가 미비하여 노인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노인 또는 장애인이 실질적인 교통안전을 보호받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노인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에 교통표지, 횡단보도 신호기 등교통안전 시설·장비나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도

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제4항 및 제5항 신설).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 등의 단속을 위하여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의 도로 중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우선적으로 제4조의2에 따른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⑤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 구역에 노인 또는 장애인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해당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 1.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시설의 주 출입 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간선도로상 횡단보도의 신호기
- 2. 속도 제한, 횡단보도, 기점(起點) 및 종점(終點)에 관한 안전표지
- 3.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과속방지시설 및 차마의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 4. 방호울타리
- 5. 그 밖에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의2(노인 및 장애인 보호	제12조의2(노인 및 장애인 보호
구역의 지정·해제 및 관리)	구역의 지정·해제 및 관리)
① ~ ③ (생 략)	① ~ ③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④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제3항을 위반하
	는 행위 등의 단속을 위하여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
	호구역의 도로 중에서 행정안
	전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우선
	적으로 제4조의2에 따른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여야
	<u>한다.</u>
<u>&lt;신 설&gt;</u>	⑤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지
	정한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
	인 보호구역에 노인 또는 장애
	인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해당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를 요청하여야 한
	<u>다.</u>
	1.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시설의

-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간선도로상 횡단보도의 신호기
- 2. 속도 제한, 횡단보도, 기점(起點) 및 종점(終點)에 관한안전표지
- 3.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 른 도로의 부속물 중 과속방 지시설 및 차마의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 4. 방호울타리
- 5. 그 밖에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